

ILO 플랫폼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제193호 채택

노단비¹ · 함승현^{2,3*}

¹위대한상상(요기요), ²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³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및환경보건전공

Adoption of ILO Convention No. 193 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Danbee Noh¹ · Seunghon Ham^{2,3*}

¹Wesang Co., Ltd. (Yogiyo)

²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³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Gach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hort communication reports on the recent adoption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93 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and briefly introduces provisions relevant to occupational health.

Methods: The adopted convention text, official information from the 114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ere all reviewed.

Results: The convention was adopted on June 12, 2026. In principle, it covers all digital labor platforms and digital platform workers, irrespective of employment status or participation in the formal or informal economy. It requires efforts at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diseases, and other work-related health injuries, occupational risk assessment, the right to remove oneself from imminent and serious danger, and protection from violence and harassment. It also addresses employment-status classification, remuneration, social security, automated decision-making, personal data, account deactivation, dispute resolution, and implementation responsibilities. The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wo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Conclusions: Convention No. 193 is a new international benchmark for platform work. Although it does not explicitly mention climate change, the authors propose that implementation discussions in South Korea should include climate-related hazards in the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36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articularly for outdoor platform workers.

Key words: Climate change, digital labor platform, occupational health, platform worker, risk assessment

*Corresponding author: Seunghon Ham, Tel: 032-458-2634, E-mail: shham@gachon.ac.kr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21, Namdongdaero774-gil,
Namdong-gu, Incheon, 21565, Republic of Korea

Received: July 13, 2026 Revised: July 19, 2026, Accepted: August 10, 2026

 Danbee Noh <https://orcid.org/0009-0006-2120-5103>

 Seunghon Ham <https://orcid.org/0000-0002-5167-966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협약 제193호의 채택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2026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플랫폼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 제193호를 채택하였다(ILO, 2026a; ILO, 2026b).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을 직접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채택이 곧 발효를 뜻하지는 않는다. 협약은 두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부터 12개월 후 발효하며, 이후 각 비준국에는 비준 등록 1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ILO, 2026a). 우리나라가 비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II.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은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를 조직하거나 제공하는 주체를 '디지털 노동 플랫폼'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로 정의한다. 고용상 지위, 공식·비공식 경제 여부, 온라인 또는 특정 장소에서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노동권, 고용상 지위의 정확한 분류, 보수와 사회보장, 자동화 시스템의 투명성과 인간에 의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 계정 정지·비활성화, 분쟁해결과 이행책임이다(ILO, 2026a).

III. 산업보건 분야에서 주목할 조항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제4조와 제5조가 핵심이다. 제4조는 회원국이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직업상 사고, 직업병 및 그 밖의 건강손상을 예방하고, 직업상 위험을 평가하여 적절한 예방·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디지털 노동 플랫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제5조는 종사자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부당한 불이익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를 보장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거나 고객·의뢰인 등 제3자가 가하는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ILO, 2026a).

IV. 국내 적용에 대한 제언

협약의 산업보건 조항은 국내 법령과 접점이 있다. 협약 제4조의 직업상 위험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에, 협약 제5조의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는 같은 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 중지 등에 대응할 수 있다(MoEL, 2026).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기본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협약과는 적용 범위 및 보호 방식에 차이가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같은 법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제78조의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협약과는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또한 ILO 협약 제193호는 기후변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국내 비준과 이행을 논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폭염·한파 등 극한기상, 자외선,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달·운송처럼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평가에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함께 배차 압박에 따른 시간 제약,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의 확보, 위험 기상 시 작업 회피 가능성과 같은 작업조직 요인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폭염특보 발령 시 배차 시스템이 휴식시간을 보장하는지, 종사자가 불이익 없이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항목으로 둘 수 있다. 이는 협약의 명시적 요구가 아니라 ILO가 별도로 제시한 기후변화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제안하는 의견이다(ILO, 2024).

V. 결 론

협약 제193호의 의의는 플랫폼 노동을 계약 형식이나 기술혁신의 문제에만 두지 않고 국제노동기준의 대상으로 명확히 제시한 데 있다. 국내에서는 협약의 정확한 번역과 조항별 검토,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산업보건 분야는 제4조와 제5조를 중심으로 살펴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Ensuring safety and health at work in a changing climate [Internet]. Geneva: ILO; 2024 [Accessed 2026 Jul 11] Available from: URL: <https://www.ilo.org/publications/ensuring-safety-and-health-work-changing-climate>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2026(No. 193). ILC.114/Convention No. 193. Geneva: ILO; 2026a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114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nternet]. Geneva:

ILO; 2026b [Accessed 2026 Jul 11] Available from: URL: <https://www.ilo.org/international-labour-conference/114th-session-international-labour-conferen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ternet]. Sejong: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6 [Accessed 2026 Aug 6] Available from: URL:<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저자정보>

노단비(박사), 함승현(교수)